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서식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계약변경 이후에도”를 “영 제6항제2호 본문에 따른 계약변경 이후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및 제2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1.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text{제2항에 따른 합계액} \times \frac{\text{계약 변경으로 인해 감소하는 보험가입금액}}{\text{계약 변경 전 보험가입금액}}$$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의3 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구분	주(현)	총(전)	총(전)	⑩-1 납세조합	합계	
I 근무처별소득명세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여						
	⑭ 상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양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⑮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⑬ 국외근로	MOX					
	⑬-1 야간근로수당	OOX					
	⑬-2 보육수당	QOX					
	⑬-3 출산지원금	QOX					
	⑬-4 연구보조비	HOX					
	⑬-5						
	~						
	⑬-41 종업원할인액	W01					
	⑭ 수련보조수당	Y22					
	⑯ 비과세소득 계						
⑰-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분		㉗ 소득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㉛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㉜ 총(전)근무지(결정세액란의세액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㉝ 주(현)근무지					
	㉞ 납부특례세액						
	㉟ 차감징수세액(㉛-㉜-㉝-㉞)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	총급여(16,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22	근로소득공제		
23	근로소득금액		
기본소득	24 본인		
	25 배우자		
	26 부양가족 (명)		
	27 경로우대(명)		
	28 장애인(명)		
	29 부녀자		
	30 한 부모 가족		
	31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22 연금보험료제	가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나 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라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33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공제금액	
	나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34 주택자금	가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2011년 이전 채입분	15년 미만	공제대상금액
		15년~29년	공제대상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차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2012년 이후 채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차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차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공제대상금액
10년~15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차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35 계			
36 차감소득금액			
37 개인연금저축			
3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9 주택미련저축	가 청약저축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다 근로자주택미련저축		
40 투자조합출자 등			
41 신용카드등 사용액			
4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4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4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5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49	산출세액		
세액	50 「소득세법」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3 조세조약			
54 세액감면 계			
55 근로소득			
56 혼인세액공제			
57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출산·입양자 (명)		
연계	58 「과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0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의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1 보험료	보장성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2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3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9 정착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44 고령사랑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일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특별채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44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4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44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44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5 계			
66 표준세액공제			
67 납세조합공제			
68 주택차입금			
69 외국납부			
7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71 세액공제 계			
72 결정세액(49-54-71)			
72 실효세율(%) (72/21)×100			

IV 정 산 명 세

28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혼인 세액 공제	자료 구분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혼인세액공제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국세청 계										
0 (근로자 본인)							○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자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기부금		
													2023년 전체 사용분 / 2024년 전체 사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㉑ 근무처명"란 및 "㉒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전화번호/국제정착/제도→국제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제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해당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해당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1에서 해당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 근무처별 소득명세"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㉒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㉓-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한)란)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㉔-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㉔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㉕ 총급여"란: "㉔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㉔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㉖-㉘)"란 및 "그 밖의 소득공제(㉙-㉛)"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㉜-㉝-1)"란 및 "특별세액공제(㉞-㉟)"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10.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란: ㉔ 주택자금공제(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㉖ 주택마련저축(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㉗ 투자조합 출자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㉘ 신용카드등 사용액, ㉙ 우리스주조합 출연금, ㉚ 장기집합투자증권투자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 11. "㉚ 종합소득 과세표준"란: ㉚ 차감소득금액에서 ㉛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12. "㉝ 납부특례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㉞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리며, ㉟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15. "㉞ 소득·세액공제 명세"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지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 라. 장애인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 마.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바.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 사.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지출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 아. 의료비(일반, 미수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세이상·장애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투자액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8. ㉞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19.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0.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문화체육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21.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령에 따라 동등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한도) 포함)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㉞-5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 § 11)	○
		H02		소득세법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세법 § 12 3(차기존전보조금)	×
		H04		소득세법 § 12 4, 8(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㉞-18	소득세법 § 12 9 - 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㉞-4	소득세법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㉞-4	소득세법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㉞-4	소득세법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㉞-4	소득세법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㉞-4	소득세법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㉞-22	소득세법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㉞-23	소득세법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㉞-6	소득세법 § 12 14 (취재수당)	○
		H12	㉞-7	소득세법 § 12 15 (백지수당)	○
		H13	㉞-8	소득세법 § 12 16 (친제·지번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㉞-24	소득세법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급금)	○
		H17	㉞-30	소득세법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관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 12 3 차	I01	㉞-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호급여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㉞-10	작업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중대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M01	㉞	소득세법 § 1601(국외 등에서 근무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㉞	소득세법 § 1601(국외 등에서 근무에 대한 보수) 300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M03	㉞	소득세법 § 1602(국외근로)	○	
	M04	㉞	소득세법 § 1601(국외 등에서 근무에 대한 보수) 500만원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P01	㉞-1	생신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O01	㉞-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소득세법 § 12 3 러	P02		현물 급식	×	
	Q01	㉞-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Q02	㉞-2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	○	
	Q03	㉞-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1회)	○	
	Q04	㉞-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㉞-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어	R11	㉞-29	소득세법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처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급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V0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소득세법 § 12 3 처	W01	㉞-41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	
구 조특법 § 15	S01	㉞-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㉞-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Y02	㉞-14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조특법 § 88의4(6)	Y03	㉞-15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㉞-16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 12 3 자	Y22	㉞	소득세법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 18	T01	㉞-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T02	㉞-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조특법 § 19	T30	㉞-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T40	㉞-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㉞-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㉞-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㉞-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특법 § 18조의3	T50	㉞-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T12	㉞-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 § 30	T13	㉞-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㉞-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1) 퇴직연금계좌란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 연금계좌저축의 연금저축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의 연금구분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함-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 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7. 세액공제금액란, 소득·세액 공제금액란 및 소득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해당, []미해당]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 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 (상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㉙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작성 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⑨ 유형란 및 ㉖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㉚ 전세보증금(원)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적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 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 지급회차 [1 또는 2]	

작성방법

-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 됩니다.
-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 ⑩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 로 적습니다.
-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코드	
징 의 무 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재(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 득 자	⑤ 소 재 지 (주소)		⑥ 성 명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⑧ 주 소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⑯ 계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⑬ 국외근로	MOX			
		⑬-1 야간근로수당	OOX			
		⑬-2 보육수당	QOX			
⑬-3 출산지원금		QOX				
⑬-4						
⑬-5						
~						
⑬-41						
⑰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계 산	㉑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㉒		㉗ 소득세			
	㉓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㉘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㉔ 외국납부 ㉕ 납세조합 [(㉓-㉔) × 3/100] ㉖ 납부특례세액		㉙ 농어촌특별세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가 상 자 산 거 래 명 세 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관리번호				① 대상기간	년 분기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본점소재지)	⑤ 금융 기관명	⑥ 금융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⑦ 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⑧ 이용자				⑨ 가상 자산 종류		⑩ 거래 전 잔고	⑪ 거래 일시	⑫ 거래 유형	⑬ TXID	⑭ 거래 수량	⑮ 단가	⑯ 양도 등		⑰ 취득 등		⑱ 거래상대방			⑲ 거래후 잔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간번호)	계정 관리 코드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상자산지갑주소 소재지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m²)

(3쪽 중 제2쪽)

작성 방법

-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예시: 2027년 1분기).
-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소득세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⑤ 금융기관명, ⑥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 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⑧ 이용자: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취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적습니다.
- ⑨ 가상자산 종류: 국제청홀덱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코드와 심볼을 적습니다(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BTC', 조회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 '999999', 해당 심볼 작성).
- ⑩ 거래전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취득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 ⑪ 거래일시: 거래 발생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시(24시간 단위 2자리), 분(2자리), 초(2자리) 총 14자리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3월 1일 오후 1시 59분 59초 → 20270301135959).
- ⑫ 거래유형: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거래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거래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로부터 가상자산이 예입되는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취득'으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거래유형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이전	인입	기타취득
코드	01	02	03	04	05	06	07	99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⑫거래유형을 '대여'로 하여 작성하며 ⑨가상자산 종류, ⑬TXID, ⑭거래수량, ⑮단가는 공란 처리함

예) 대여 대가로 금전 30 수령, 수령 시 수수료 1 발생한 경우	⑨가상자산 종류		⑩거래전 잔고	⑪거래 일시	⑫거래 유형	⑬TXID	⑭거래 수량	⑮단가	⑯양도 등		⑰취득 등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	-	-	10	20270301135959	05	-	-	-	30	1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⑫거래유형을 '대여', '기타취득'으로 하여 각각 작성하되 ⑨가상자산 종류, ⑬TXID, ⑭거래수량, ⑮단가는 각각 동일함

예) 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3개 수령 (수령 시 시가는 단위당 10), 수령 시 수수료 1 발생한 경우	⑨가상자산 종류		⑩거래전 잔고	⑪거래 일시	⑫거래 유형	⑬TXID	⑭거래 수량	⑮단가	⑯양도 등		⑰취득 등		⑲거래 후 잔고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000145	BTC	10	20270301135959	05	Ox96864df	3	10	30	1	30		10
000145	BTC	10	20270301135959	99	Ox96864df	3	10			30	공란	13	

10. ⑬TXID: 거래유형이 대여, 이전, 인입, 기타취득의 경우 적습니다(트랜잭션ID, 거래 ID, TX Hash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상에서 체결된 거래의 고유식별기호를 기재).

11. ⑭거래수량: 거래유형별로 거래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예시: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작성 방법 (계 속)

12. ㉞양도 등, ㉟취득 등, ㊱거래상대방 란의 거래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	거래 유형	거래유형 예시	㉞양도 등	㉟취득 등	㊱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 (가상자산A를 매도하고 원화 수령)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를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공란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 (원화를 지급하고 가상자산A를 매수)	공란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03	교환 양도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를 가상자산B와 교환)	가상자산A의 교환양도가액과 교환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공란
04	교환 취득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를 가상자산B와 교환)	공란	가상자산B의 교환취득가액과 교환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거래로 별도 작성합니다	공란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과 발생 수수료를 각각 거래가액·수수료란에 적고,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의 그 가상자산의 시가와 발생 수수료를 각각 거래가액·수수료란에 적습니다.	공란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공란 *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거래로 별도 작성합니다	공란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인입	외부로부터 가상자산 예입	공란	공란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 취득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등)	공란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 수령 시 수령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 13. ㉞양도 등 :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14. ㉟취득 등 :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기타취득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15. ㊱거래상대방 :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 이전, 인입, 기타취득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기재합니다(국세청 홈택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 16. ㉞거래후잔고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취득의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참고: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 취득하여 거래유형 '대여'로 작성한 것은 실제 가상자산 수량 차이가 아니므로 거래후잔고는 거래전잔고와 동일하고,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 취득하여 거래유형 '기타취득'으로 작성한 것은 실제 가상자산 수량 증가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거래후잔고 작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개정 2025. 6. 00.>

(알 폭)

가 상 자 산 거 래 집 계 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대상 연도		년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금융 기관명	⑥ 금융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⑦ 가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성명	⑧ 이용자		⑨ 거래내용						⑩ 연간 변동내역											
		주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⑩ 가상자산 종류	⑪ 양도 등 거래 (매도, 교환양도)			⑫ 취득 등 거래 (매수, 교환취득, 기타취득)			⑬ 이전 거래	⑭ 인입 거래	⑮ 대여 거래		⑯ 기초재고		⑰ 증가	⑱ 감소	⑲ 기말재고		
		코드	심볼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수량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수량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집계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발생한 연도를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소득세법」 제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⑤금융기관명, ⑥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기초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초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초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⑧이용자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⑨거래내용 : 이용자별,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양도 등', '취득 등', '이전', '인입', '대여' 거래내용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⑩ 가상자산 종류 : 국제청홈텍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코드와 심볼을 적습니다(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BTC', 조회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 '999999', 해당 심볼 작성).
- ⑪양도 등 거래 : 인별, 가상자산별 연간 양도 등 거래의 수량, 가액,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도·교환양도, 이전 거래 시 가상자산으로 수수료 지급 등 가상자산 보유수량이 감소하는 거래를 포함하되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을 받은 거래는 ⑩양도 등 거래에 작성하지 않고 ⑫대여 거래에 작성)

* 수량은 최소 거래단위까지 작성(예)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가액 및 수수료는 원단위(소수점 이하 절사)로 작성. 이하 동일

- ⑫취득 등 거래 : 인별, 가상자산별 연간 취득 등(매수·교환취득·기타취득(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한 경우 등))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⑬이전 거래 : 사업자 외부(다른 거래소,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등)로 이전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⑭인입 거래 : 사업자 외부(다른 거래소, 해외 거래소 등)로부터 인입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⑮대여 거래 : 가상자산 대여 거래로 받은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포함)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⑯연간 변동내역 : 대상연도 1년간 인별, 가상자산별 증감과 기초·기말재고의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연간 수량 변동내역 : ⑰기초재고 + ⑱증가 - ⑲감소 = ⑳기말재고]
- ⑰기초재고 : 대상연도의 기초(1.1.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 이용자의 단위당 취득가액 수정여부(Y/N)를 적습니다. 단,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최초로 시행되는 과세연도(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단위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 ⑱증가 : 수량은 ⑫ 취득 등 거래 수량과 ⑭ 인입 거래 수량의 합계 수량을 기재하고, 단위당 취득가액은 ⑫ 취득 등 거래의 가액을 수량(=⑫ 취득 등 거래 수량+⑭ 인입 거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된 가액을 기재합니다.
(작성예) ⑫ 취득 등 거래의 수량과 가액이 각각 10개, 150원이고, ⑭ 인입 거래 수량이 5개인 경우: ⑱ 증가의 수량 = 15개(=10개+ 인입 5개), 단위당 취득가액=10원(=150원/15개)
- ⑲감소 : ⑩ 양도 등 거래의 수량과 이전 수량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⑳기말재고 : 대상연도의 기말(12.31. 24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연간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작성예) ⑰ 기초재고 : 수량 10개, 단위당 가액 5원, ⑱ 증가 : 수량 15개, 단위당 취득가액 10원, ⑲ 감소 : 수량 5개 인 경우,
㉑ 기말재고 : (수량) 기초 10 + 증가 15 - 감소 5 = 20.00000000, (단위당 가액) [기초 50원(=10개×5원) + 증가 150원(=15개×10원)] ÷ 25개(기초 10 + 증가 15) = 8원/12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5. 6. 00.> (10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봉징수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소득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담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별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정상액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내·외국인	주인등록번호	인적공제 항목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유예	혼인·세월·공제		건강	보장성	장애인 인정 보장성	일반		미숙아·신생아·신장장애	남양
0						국세청 기타계							
						국세청 기타계							
						국세청 기타계							
						국세청 기타계							

유의사항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양자녀) ("소득세법" §50(3나))	4	직계비속(부모 4 제외) ("소득세법" §50(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3다))	6	수급자(코드 1-6제외) ("소득세법" §50(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3라))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유예: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여부 "√" 표시합니다.
- "부녀자 공제"란: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 "장애인 공제"란: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중 발달장애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형식 차이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중(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중(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중(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중(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처상환 대출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기타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IV. 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2023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 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4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 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2025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 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신용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문화체육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신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⑦ 소비증가분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증가금액						
계(①+②+③+④+⑤+⑥+⑦)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II.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정부가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역량 성과보상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15%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장애인·건강보험신상특례자	지출액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30%			
	미숙아·산전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15%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 (일반)	기부금액			15%		
		10만원 초과 (특별재난)	기부금액			30%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15% · 30%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				남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5% 또는 1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2. 총(전) 근무지 명세	총(전) 근무지명	총(전) 급여총액	총(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수준
	사업자등록번호	총(전) 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 사항

1. 근로소득자가 총(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업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환급금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업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세액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액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용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액차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액차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연금액차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료	모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모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연금모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연금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미수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정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나)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아.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입학료,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실시하는 재합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시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시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시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시주조합기부금) × 30%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의 사항

1. 공제항목별 연간 지출금액(모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저축합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본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혼인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연금액차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료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의 사항

1.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 금액

작성 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1)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거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저축 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 소득공제금액란, 세액공제금액란 및 소득·세액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 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 (상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㉙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작성 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⑨ 유형란 및 ㉖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㉚ 전세보증금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자녀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⑧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 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 지급회차 [1 또는 2]	

작성방법

-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 됩니다.
-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 ⑩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 로 적습니다.
-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기부금액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⑭ 공제 제외 기부금 (⑮+⑯)	⑮ 기타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특례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특별재난 지역)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코드	10	20	43	44	40	41	42	10,40,41	50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지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⑬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 (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 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작성 방법

- 1. ㉞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학으로 신학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로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462

- 2. ㉟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3. ㊱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특별재난지역)	44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 4. ㊲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 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신 설>	1.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begin{matrix} & & \text{계약 변경으로 인해 감소하는} \\ & & \text{제2항에} \\ \text{따른 합계액} & \times & \text{보험가입금액} \\ & & \text{계약 변경 전 보험가입금액} \end{matrix}$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2. -----
-- 영 제6항제2호 본문에 따른 계약변경 이후에도 -----
-----.

3. -----
-- 제1호 및 제2호에 -----
--.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 제4호까지-----.